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24. 10. 22.(화)



행정복지위원회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58호
- 제출일: 2024년 9월 30일
- 제출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2. 제안사유

- 군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달성군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육성·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형식적 관 주도적 협치체제에서 벗어나 군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3조~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달성군 관내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재정법」 제17조는 공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비용의 지원을 명시한 사업 내용은 지역발전 사업 및 공익사업으로 이는 주민의 복리증진, 지방문화 진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정안건에 명시된 사업 중 해맞이 사업의 경우 관내 읍·면 번영회, 새마을회, 자연보호협의회 등이 주관하고 있으며, 신년인사회는 달성 청년회의소(달성JC)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의소는 1988년 창립하여 지역사회 개발, 사회문제 해소 등의 운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NGO)로 민간단체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에서 자치법규 상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을 위해 지원하는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향후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지, 달성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에 따라, 민간단체가 추후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 수 있기에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추어 제2조 각 목의 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59호
- 제출일: 2024년 9월 30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2. 제안사유

- 달성남부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중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성군립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24조)
- 달성남부도서관 명칭 변경(안 별표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서관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남부도서관 명칭 변경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 ‘달성남부도서관’ 은 2022년 10월 도서관 명칭을 선정하여, 2023년 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상 군립도서관 명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 당초 일반도서관으로 설립 예정이었으나, 영유아·어린이 도서관으로 주 이용자 층이 변경됨에 따라 공감할 수 있는, 이용자 층에 적합한 명칭으로 선정하기 위해 직원 설문 및 심사를 통해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 현재 달성군은 공공도서관 3개소[달성도서관, 달성군립도서관, 아트도서관(사립)] 및 작은도서관 11개소를 운영중입니다.

<대구 관내 타 자치구 도서관 현황>

구 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군위군	달성군
개 수	9	23	13	4	14	9	17	1	14

※ 건립 예정인 달성군 도서관은 ① 비슬도서관, ②화석박물관이 있음. 건립예정 도서관까지 합할 경우 달성군은 16개

- 2014년 달성군립도서관이 개관한 이래, 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후,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올해(2024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군립도서관을 지역중앙관으로 운영하며, 지역구별 거점도서관을 통해 조직 운영 계획중이며 거점도서관 활용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형태 전환 모색, 통합 운영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2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562호
- 제 출 일: 2024년 9월 30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2. 제안사유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된 바, 의회 동의를 얻고 재계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자원봉사센터	화원읍 성천로 5,	여성문화 복지센터 2층 (245.05㎡)	8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정규직	계약직
인원	8	1	1	3	3

라.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4.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

○ 2024. 8. :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 접수

※ 신청기관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2024. 8. 26. ~ 3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재계약 적정 판단)

※ 심의 결과(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최고·최저 제외 평균)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86점

○ 향후일정

- 2024. 10. : 의회 동의

- 2024. 10. ~ 11. : 협약체결(2025. 1. 1. ~ 2027. 12. 31.)

- 2024. 11 : 공보 게재

- 2025. 1. : 위·수탁 개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과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설립되어 달성군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와 관련한 ①시책사업, ②관리지원사업, ③교육훈련사업, ④맞춤형 특화사업, ⑤홍보사업, ⑥연대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여 공동체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2013년 처음 수탁기간으로 선정 된 이후, 총 12년간 5회 재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2024. 12. 31.)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오음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①사업추진실적(찾아가는 교육 확대 및 대외 수상실적 등), ②감사 결과 반영(민간위탁 집행 부적절한 사항 군청자산에 등록), ③기관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 지침 기재 완료 ④서비스 개선계획(신규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86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격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인 운영 및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의 행정재산임을 고려할때,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위탁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